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정보

만일 당신이 가정폭력피해자이고 경찰을 불러 왔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고 또 어떻게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도움으로 당신의 소중한 소지품을 챙겨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집 아니면 가정폭력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을 도우려 나온 경찰의 관할구역이 한 구역 이상일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구역내 안전한 곳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들이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할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경찰의 사건보고서 사본을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방검찰이나 법집행관인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당일이나 그 다음날로 법정에 출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럴 경우 가정폭력으로 고발당한 피고소인 또는 피고인은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또한 피고소인에게 아이들에 대한 임시양육비를 지불하라는 법원명령을 내리고 임시로 당신에게 양육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가정법원이 주말이나 공휴일로 닫혀있을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부터 당장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만일 당신의 개인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료로 관선변호사를 배정받게 됩니다.

접근금지명령신청서는 가정법원이나 형사법원에 언제나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

지방형사법원:

(첨부된 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가정폭력이나 상처치료 그리고 피신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뉴욕주 가정폭력 긴급대처 무료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영어) : 1-800-942-6906

(스페인어): 1-800-942-6908

당신은 인근지역의 가정폭력긴급대처 무료전화번호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거짓으로 형사법원이나 가정법원에 가정폭력을 고발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됩니다.